

기안용지

분류기호 문서번호	취사3,1507	(전화번호 2. 620)	전국	경찰	정전	결사	조항
처리기간		시					
시행일자	26. 11.	김우원					
보존년한							

보조기관	취사장 관 취사장 관 보로계 관	협	취사장 취사장 관 보로계 관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

기안책임자 김우원 (취사3,1507) 주

경수참	유신조	추방참조	신	시	공	동계	검인 1976.11.17
-----	-----	------	---	---	---	----	------------------

제목 노가우 (서울특별시 보호수) 청

안 1
 우선. 배부청제
 1. 동부청 1152-3170 (26. 11. 10) 호로 관련 입거자
 2. 취사로 보호수 청원서로 되어 있어 이해수득에 따라
 서울특별시 노가우 관리 요청 및 청원서 제2호로 동부청 청
 제20호에 의거 청고사하고 취사로 청이

구분	청원서	수종	수고	관리경	우경	소유권	소재지
지점	112	취사	1507	1.5m	취사	취사	취사16

첨부 고사 안 1 부. 끝.

안 2
 우선. 공보실장
 취사 관은지

별첨 고사 안 수종과 같이 서울특별시 청 보호수로
 청원서 청고사. 수종에 게시. 하여 청이. 부감나리.

첨부: 고시안 부본 1부, 끝.

23

우선, 동구청장

장로, 산청시장

사무, 끝은 간

1. 선업 1152-3170 (76. 11. 10) 의 관청인.

2. 위대호에 위가 위대호 노각수에 대하여 행정 처
안 수복과 같이 행정 처 하였으니 서울특별시 행정 처
판의 요령에 위가 판리에 처자를 처할 것.

첨부: 고시안 부본 1부, 끝.

작성일자	1976. 11. 26	제 57P
작성자	법제국장	법무부
승인		

서울특별시 고시 (한)
 서울특별시 고시 제 3호

노기우로 정정 하기로
 시행령 제 29호의 정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
 노기우로 정정 하기로 하는 것임

1976. 11.

서울특별시 강

1. 정정문 및 정정문 노기우, 11호.
2. 소 제 자, 서울연구 협회 16번
3. 소 제 자 및 정정문, 서울특별시 (공민)
- 4.

수무	수령	우고(의)	총리경
법무	법무	15"	15"

5. 정정 변경일 및 정정문 1976. 11. 서울특별시